

꽃망을 터뜨린 매화 양양에 봄을 알리다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이정철

꽃망을 터뜨린 매화 양양에 봄을 알리다

폭설이 지나간 자리에 봄의 전령사
매화가 생명의 싹을 활짝 틔우는
꽃망을 터뜨리며 포근함을 전한다.

설악산과 남대전을 사이로 아름다운
양양의 자연이 곳곳에서 봄소식을
전하며 생동감으로 넘쳐나고 있다

꽃꽂한 기상과 절개를 자랑하는 매화
그 봄의 향기가 종전의 고장 양양에도
널리 퍼져 나가며 향기로운 봄을 채운다.

지 면 안 내

- 2면 어린언어들 모친 떠나 머나먼 여정 올라
- 5면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㉓
- 8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11면 군정종합

- 3면 의정소식
- 6면 4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
- 9면 후보자 등록
- 12면 생활정보

- 4면 공명선거 정착 동반 캠페인
- 7면 사전투표제도 안내
- 10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동반자 '주택연금' 안내

어린연어들 모천 떠나 머나먼 여정 올라

지난 21일 양양남대천서 어린연어 방류행사 가져
올해 2,100만 마리 방류...연어사업소 과학적 관리 추진

역대 가장 많이 생산된 어린연어들이 양양 남대천을 떠나 머나먼 여정에 올랐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지난 21일 양양남대천 둔치 하천에서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4 연어방류

행사를 갖고 어린연어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이날 방류한 어린연어는 지난해 10~11월까지 남대천 등 동해안 하천으로 돌아온 어미연어를 채포, 선별과 채란, 수정, 부화과정을 거친 5~7cm크기로 자란 것으로

1~2개월 남대천에서 살다, 3~4년간의 여정을 하고 다시 모천인 양양남대천으로 돌아온다.

양양연어사업소(소장 흥관의)는 이날 방류에 앞서 지난 1월24일~2월20일까지 양양남대천에서 1,050만 마리의 어린연어를 방류한데 이어 3월11~27일까지 양양남대천을 비롯해 부산 낙동강과 울산 태화강, 고성 북천과 명파천

, 강릉 연곡천 등에 총 2,10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어린연어 방류량인 2,825만 마리의 74%를 차지한다.

연어사업소는 올해도 연어의 회귀율 산정과 연령사정, 회귀경로 규명 등 보다 과학적인 연어연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부화직전의 발안란에 '이식표지'를 한 어린연어 600만 마리도 방류할 계획이어서 연어자원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방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연어자원 증강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은 가운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어린연어의 방류 확대를 위해 생존율과 회귀율 향상 등 과학적인 연어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방류된 어린연어는 양양남대천~동해~알래스카~베링해~감차카반도~오츠크해~동해를 거쳐 다시 남대천으로 돌아오는 3만2천km의 대장정에 오른다.

이날 어린연어를 직접 놓아준 학생들은 "내가 놓아준 어린연어가 다시 고향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때가 기다려진다"고 마냥 즐거워했다.



'남북통일 기원 나무심기' 희망 전해

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 서면에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단장 김정열)이 제69회 식목일을 앞두고 통일의 희망을 싹틔우기 위한 '통일희망 나무심기' 행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도로공사는 지난 18일 건설단 인근 서면 용천리 한남초교 5.6학년 학생들과 함께 도로공사 양양지사 예정부지에 소나무 묘목 1천주를 식재하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이날 도로공사는 참여자들에게 봉숭아와 과꽃, 채송화 등 씨앗을 나눠주며 이 씨앗이 앞으로 통일의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했다.

도로공사는 현재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 통일의 초석을 다지도록 금강산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로공사 건설현장에서 이번 통일희망 나무심기 행사를 기획했다.

도로공사의 청렴도 높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삼척속초건설사업단은 이번에 식재한 통일희망 나무를 잘 관리해 민둥산으로 변해가고 있는 북한지역의 푸른 숲 가꾸기에 도움이 되도록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016년까지 고속도로 부지에 '통일희망 나무' 1,500만 그루를 심어 국민들의 염원인 남북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낙산사서 평화통일 범종 타종

한미연합사령관 낙산사 방문 전통문화 체험



한미연합사령관 일행이 지난 15일 천년고찰 낙산사(주지 도후스님)를 방문, 한국불교의 이해를 넓히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이날 커티스 스카파로티 사령관 부부와 박선우 부사령관 부부, 김유근 8군단장 부부 등은 도후스님의 안내로 낙산사의 창건과 역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이들은 2005년 산불로 소실된 후 원형 복원된 원통보전에서 그동안의 복원과정을 듣고 범종루에서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범종 타

종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한미연합사령부의 낙산사 방문은 접경지역에 위치한 낙산사에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체험으로 한미간의 돈독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후 주지스님은 "한반도의 평화가 곧 세계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번 한미연합사령부의 낙산사 방문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많은 풍파를 이겨낸 낙산사가 그 중심에서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축원했다.



의 정 소 식

장례식장 운영 및 문화관광해설사 원조례 등 의결

제197회 임시회 열어...의원발의 5건 등 총 11건 처리

우리군의회의는 김일수 의장 주재로 제197회 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총 11건의 조례·규칙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을 각각 살펴보면 김택철 부의장은 주민 복지를 위한 공익적 기능이 큰 장례식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사문화 개선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 지역 문화를 널리 알리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오세만 의원은 장애인 복지법 제6조 및 동법 제30조에 따라 신체적 제약으로 외부 활동이 적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유료방송 요금을 지원 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정보 수용과 다채로운 방송문화 콘텐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 김일수 의장을 대표로 의원 전원은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업인까지 확대하여, 지역내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우섭 의원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소중

특히 박정숙 의원을 대표로 의원 5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방청의 제한) 제1항 제3호 내용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및 제37조에 따라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 비하 표현이라는 의견을 반영해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영동 최초 강현농협 육묘은행 준공

강현면 장산리에 조성...총 3만장 공급 계획



강현농협(조합장 전용우)이 지난 13일 영동권 최초로 못자리 육묘은행을 개설하고 봄철 모내기부터 본격적인 못자리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강현농협은 충실한 육묘생산으로 양양해프미의 수확량 증대는 물론 올부터 육묘장과 연계한 농기계 직영 사업을 추진해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원-스톱으로 농사를 짓는 위탁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임대작업료는 트랙터의 경운 및 정지는 1평당 100~150원, 이앙기를 이용한 모내기는 1평당 100~120원, 콤바인 수확은 1평당 180원으로 책정했다.

강현농협은 이날 오전 11시 육묘은행이 완료된 강현면 장산리 현지에서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묘은행 준공식을 가졌다.

소규모 농협으로 출발한 강현농협 영동권 최고 육묘은행을 자체적으로 개설함에 따라 기존의 소규모 도정공장(RPC)과 함께 벼농사의 자동화 및 규모화가 가능해져 농업인들의 편의증진 및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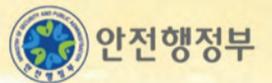
육묘은행은 도비와 군비, 자부담을 포함해 총 3억5천여만원이 투입돼 3,495㎡(1천평)의 부지에 672㎡(203평) 규모로 건축돼 오는 5월부터 못자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전용우 조합장은 “조합원들과 양양관내 농업인들의 숙원이던 육묘은행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돼 보람이 크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영농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농가 소득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현농협은 이곳을 통해 오대벼와 오문벼 등 특화품종의 벼를 1회 1만장씩, 3회에 걸쳐 총 3만장의 모판을 생산해 30만평의 논에 공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의 복지증진 일환으로 육묘 1장당 2,500원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어서 인력부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며, 주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각종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건물번호의 주소체계를 통해 위치 찾기 편의성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로명주소가 조속히 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로 양양을 치면 새로운 양양이 보입니다”

주소검색은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명선거 정착 등반 캠페인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설악산 흘림골에서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흘림골에서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혜림)가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5일 설악산국립공원 흘림골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명선거 기원 등반행사를 가졌다.

전인원 사무과장을 비롯한 선관위 직원들은 이날 남설악 흘림골을 출발해 등산대까지 등반하며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팸플릿을 배부하고 자연정화 활동도 펼쳤다.

제36회 양양현산문화제 6월19일 개막

지방선거 후 군민화합 및 지역발전 도모



제36회 양양현산문화제가 오는 6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대천 둔치에서 열린다. 현산문화제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문화복지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양동창 문화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올해 현산문화제 일정 등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까지 잔여임기를 수행하던 최익수 전 강현농협조합장을 만장일치로 신임 위원장으로 추대했고, 부위원장에는 박필용 양양군이장협의회장과 이태희 남대천보전회장을 선출하는 등 34명의 위원을 선출했다.

현산문화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현산문화제는 지방선거 후 지역화합을 도모하고 풍농풍어를 기원하며 역사성과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향토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양양문화원이 주관해 3현 독립운동의 명맥을 유지하며 양양인의 기상과 애국심, 애향심을 더욱 드높이는 특색 있는 향토문화축제로 승화시킨다는 구상이다. 현산문화제위원회는 이에 따라 앞으로 문화원 주관으로 소위원회를 열어 프로그램 다양화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부터 예비군훈련 개선 전환 추진

육군 8군단, 합격제 및 조기 퇴소제 시행

육군 8군단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예비군훈련이 실질적인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향토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부터 영동지역의 예비군훈련에는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 퇴소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훈련의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추진한다.

특히 예비군훈련 우수자가 많은 경우에는 조기 퇴소 인원을 최대 30%까지 적용하고 불합격자는 집중교육을 실시해 훈련의 실효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집통지 방법을 기존 우편방식에서 벗어나 공인전자 주소체계(샵 메일)를 적용해 통지에

들어가는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고 훈련 대상자들도 등기 없이 편리하게 소집통지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훈련 일정 및 훈련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훈련 보상비도 올해 기준 1천원이 인상된데다, 1인당 1일 급식비 역시 6.5% 인상돼 예비군훈련의 질을 대폭 높였다.

8군단은 올부터 대학 졸업유예자 및 유급자 등은 일반 예비군과 동일한 동원훈련을 부과하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군수 등에 대한 예비군 보류제도를 해제해 복무의무 형평성을 맞춘다고 덧붙였다.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戲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마-44-2. 농요(모 심는 소리)

양끝에서 바짝 당겨 꽃은듯 만듯한 못줄앞에 일정한 간격으로 서서 미리 던져 놓은 못줄을 들고 모심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옆사람과의 간격도 속도감도 매우 중요하 하겠습니 다. 그만 눈치없이 느리다거나 머뭇머뭇하다간 낭패를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혹 장난끼가 발동되어 못줄을 툭길라치면 흙탕물이 얼굴에 번집니다.

미처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거둬 당겨 더 심한 꼴을 당합니다. 또 사방에서 띄운 된소리에 비웃음에 몸둘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도 그 장면 추억이었습니다. 지금 기계화 문명에서 찾아 보기 힘든 옛 이야기로 가끔 주위를 맴돌뿐입니다.

어서 어서 하더니
나도
나겠네

한 춤 한 춤
또
한 줄.

※ 춤 = 가늘고 한 손으로 짚만한 분량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자수기간 : '14. 4. 1 ~ 6. 30 (3개월)

신고번호 : 122, 033) 680-2859

신고처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③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 1. 오색령의 지명에 관한 기술
 - 2. 한계령으로 지명 변천 기술
 - 3. 오색령·한계령 고증 비교
- III. 오색령 지명 복원의 당위성과 복원절차
 - 1. 오색령 지명 복원의 당위성
 - 2. 현행법상 지명 복원절차
- IV. 맺는 말

이번호 부터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우리고장 문화유산 되짚어보기 논문을 실습니다.

(7) 명암집(鳴巖集)

명암 이해조(鳴巖 李海朝) 1660~1711년]가 1709년 양양부사 재임 시 현산삼십경(峴山三十景)을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과 읍은 현산삼십영(峴山三十詠)시(詩)에 “오색령(五色嶺)은 양양부(襄陽府) 서쪽에 있는데 고비고사리가 많이 난다.” 라고 설명하였다.

(8) 양와집(養窩集)

양와 이세구(養窩 李世龜) 1646~1700년]의 양와집(養窩集)에 1691년(辛未) 10월 3일(甲申) 동유록(東遊錄)에 “조침령의 북쪽은 오색령이고 그 동쪽은 양양(襄陽)이고 서쪽은 인제(麟蹄)이며 오색령 북쪽에 미시과령을 이룬다.” 라고 적었다.

1693년(癸酉) 6월 그믐날 양와(養窩)가 자익 김창흡(子益 金昌翕)과 더불어 글을 쓰다. 라는 제하의 글 속에 “호수와 바다를 탐승하며 낙산사(洛山寺)에 이르니 스님이 설악산(雪嶽山) 북쪽의 가지를 가리키면서 저것이 오색령(五色嶺)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적었다.

(9) 풍악록(楓嶽錄)

저촌 심육(樛村 沈鑄) 1685~1753년]이 1713년(癸巳)에 쓴 일기 풍악록(楓嶽錄)에 투촌 사람 집에 유숙하니 역시 회양 땅이다. 주인 이름은 손일성이며, 그 아들 순흥이 말하기를 일성은 오색령(五色嶺)에 사는 한승운의 매제라 하였다.

(10) 연려실기술별집 제16권(燃藜室記述別集 第16卷)

이금익(李肯翊) 1736~1806년]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6권 지리전고(地理典故) 총지리(摠地理)에 “동쪽에서 일어나 철령(鐵嶺)이 되고, 동북쪽으로는 황룡산(黃龍山)이 되었으며, 남쪽으로 뻗어서 유관령·추지령·금강산·회전령·진부령·흘리령·석파령·설악 한계산이 되고, 오색령·연수파로 이어지고, 오대산·대관령 두타산·백복령이 되었다.”라고 적었다.

(11) 택리지(擇里志)

조선후기 실학자 이증환(李重煥)이 영조 27년(1751년)에 저서 『택리지(擇里志)』에서 산천산수를 논하며, 백두산은 여진과 조선의 경계에 있으며, 한 나라에 북두칠성을 둘러싼 별처럼 되어 있는 그 위에는 둘레가 80 리나 되는

큰 못이 있는데, 서쪽으로 흐르는 것은 압록강이고, 동으로 흐르는 것은 두만강이고, 북으로 흐르는 것은 송화강이며 두만강과 압록강의 안쪽이 곧 우리나라이다. 백두산에서 산맥은 가운데로 뻗어 함흥에 이르고, 동쪽 가지를 따라 뻗은 두만강 남쪽, 서쪽 가지를 따라 뻗은 압록강의 남쪽이다.

함흥에서부터 산등성이가 동해에 좁게 치우쳐 서쪽 가지는 칠팔백 리에 달하고, 동쪽 가지는 백 리 미만인 대간은 남으로 내려가 수천 리를 끊이지 않고 옆으로 골짜기를 이루고 경상도에 이르러서 태백산과 통하였다. 한줄기 영이 함경도와 강원도가 만나는 곳에 철령(鐵嶺)이 되었으며 이 영(嶺)을 통해 북쪽은 대로다.

그 아래로 내려와 추지령(湫池嶺)·금강산(金剛山)·연수령(延壽嶺)·오색령(五色嶺)·설악한계산(雪嶽寒溪山)·오대산(五臺山)·대관령(大關嶺)·백복령(白鳳嶺)에 이어 태백산(太白山)으로 이어졌다. 여기저기 솟은 고저가 고르지 않는 산은 모두 골이 깊고 높은 산봉우리가 중첩되어 있다. 영(嶺)을 이르기를 영의 등성이 점점 낮아져 평평한 곳을 열어 길을 내어 영동과 통하게 하였으며 그 나머지 모두 이름 있는 산이라 부른다.

(12) 다산시문집 제7권(茶山詩文集 第7卷)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년] 시(詩) 소양강을 건너서 두보의 수회도시에 화답하다(昭陽渡和水廻渡) 시(詩) “寤寐五色泉 何由得一餐(자나 깨나 바라나니 오색의 샘물을 어떻게 해서 한번 마셔 볼거나)” 라고 읊고. “설악산 동쪽이 곧 양양의 오색령(五色嶺)인데 여기에 영천(靈泉)이 있다.”라고 적었다.

(13) 해좌선생문집(海左先生文集)

해좌 정범조(海左 鄭範祖) 1723년~1801년]의 시문(詩文) 상운역승을 만나러 오색령에 갔으나 영천(靈泉)만 마시고 만나지 못했다. 에서 “길을 찾아가니 오색령(五色嶺)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답다.” 라고 읊었다.

1779년 설악기(雪嶽記)에 “동남방은 숲과 골

짜이 아주 아름답다. 동쪽은 오색령인데 영천(靈泉)이 있어서 체증에 좋다고 한다.”라고 적었다.

(14) 기관동산수(記關東山水)

연경제 성해응(研經齋 成海應) 1760~1839년]의 기관동산수(記關東山水)에 설악산에 관한 기록 가운데 “설악산은 눈같이 교결(皎潔)하여 설악산이라 칭하는 바, 오색령으로 이어졌다.”라고 적었다.

(15)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4(軍政編四) 관방(關防) 강원도[조선 순조 8년(1808년)경에 시임(時任) 호조판서(戶曹判書) 서영보(徐榮輔)와 부제학(副提學) 심상규(沈象奎)가 같이 비국유사당상(備局有司堂上)으로 있으면서 왕명을 받들어 찬진(撰進)한 것이다.]에 “양양영로(襄陽嶺路)는 오색령·필여령·기린(棋麟)통로는 소동라령·조침령·구룡령은 강릉과의 경계. 형제현(兄弟峴)·양한치(兩寒峙) 모두서쪽 통로다.”라 기록되어 있다.

(16) 금강산총기(金剛山總記)

식산 이만부(息山 李滿敷) 1664~1732년]의 금강산총기 서두에 대체로 우리나라의 산은 백두산에서 비롯되었으며 백두산(白頭山)의 낙맥(落脈)이 남으로 흘러 철령에 이르며 남북의 경계를 이룬다. 이곳에서 동으로 흘러서 추지령·쇄령·온정령 등 세 고개가 되고 이것이 팔백리를 관통하여 온정령에 이르고 다시 남쪽으로 삼십리 지점이 금강산이다. 금강산은 동해 바다를 따라 백리를 내려가 진보령(진부령)이 되며 진보령에서 오십리를 더 가면 석파령, 그곳에서 삼십리를 더 가면 미치령, 다시 육십리를 가면 한계산이 되고, 다시 삼십리를 가면 오색령에 이르며, 이곳에서 구십리를 가면, 오대산에 이르고, 삼십리 거리에 대관령이 되고, 사십리 거리에 백복령이 되고, 백리 거리에 태백산과 황지가 된다. 이것이 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그 위아래의 형승이 막히고 험준한 모습의 대략이다.



4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

1.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 ▶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4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 ▶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 공무원의 줄 세우기 · 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 · 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2.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 ▶ 지방선거는 7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주민들이 뽑아야 할 후보자가 많습니다. 후보자 간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합니다.
- ▶ 물론 당내경선에서의 후보자 결정과정도 합법적이고 선거에서 정당 간 합의에 따라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하지만 금품 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판매직 행위이자 선거법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의 줄 세우기 · 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 ▶ 지방공무원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과 근무 중 직접적인 교류가 빈번하여 개인적 친분이 있을 수 있고 업무수행 중 범죄라는 특별한 인식 없이 업무를 일탈하여 선거기획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현역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정보를 수집하여 후보자에게 보고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 ▶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적 요청입니다.

4.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는 무엇인가요?

- ▶ 공정한 여론이 형성되어야 유권자가 후보자결정에 있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 ▶ 선관위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이번 선거에서 '불법선거여론조사 전담팀'을 설치하여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5.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를 일정 수 이내로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한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야기될 수 있는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 육상경기에서 선수는 출발선에서 동시에 출발합니다. 미리 앞서서 나가거나 특별한 장치를 이용하여 달린다면 그 경주는 공정한 경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 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조직 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장으로 이용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범죄입니다.

6.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중대선거범죄만을 단속합니까?

- ▶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나 유권자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하거나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전 안내와 현지 시정조치를 통해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 ▶ 선관위는 선거구내 후보자간에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예방·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 중대선거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 ▶ 중대 선거범죄는 그 특성상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

적인 신고·제보와 선관위의 단속의지가 결합되어야 중대 선거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 ▶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제도 안내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 ▶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3.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4.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5.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 ▶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사전투표 기간은?

- ▶ 사전투표 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입니다.
- ▶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 30일(금), 31일(토) 이틀간입니다.

7. 사전투표 시간은?

-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 ▶ 사전투표 마감시각이 오후 4시까지인 이유는 사전투표 기간 중 매일 관할 선관위에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그 발송 작업(우편봉투수 확인, 우체국 인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8.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곳 설치됩니다.
- ▶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과 국가정보통신망 확보 등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사전투표소에 갈 때 필요한 것은?

- ▶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첨부된 학생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0.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선거기간 중 출장으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부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 ▶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 ▶ 즉,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으며, 출장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선거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투표용지를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 ▶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무인이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 7장과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 ▶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합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7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 노원구 상계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 A씨가 상계1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만 받고, 상계2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함께 받게 됩니다.

12. 관내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관할구역(읍·면·동)내의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관할 선관위에 인계함으로써 등기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13.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 ▶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읍·면·동 관할구역 내의 투표지는 투표함을 봉합·봉인한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참관인, 경찰관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합니다.
- ▶ 읍·면·동 관할구역 외의 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 관할 선관위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하고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14. 사전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하나요?

- ▶ 관할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하여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를 하게 됩니다.

15. 동일인이 다른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할 우려가 있습니다.

- ▶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6. '무인 또는 서명입력기'에 무인은 왜 하나요?

- ▶ 투표용지 교부 전 무인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 보장의 일환으로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일반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17.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우려가 있습니다.

- ▶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18. 통합선거인명부 해킹 위험은 없나요?

- ▶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국가정보통신망이나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주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히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아울러, 다중 방어체제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보안전문 인력 투입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만일의 해킹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9.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어떤 정보가 있나요?

- ▶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선거인의 세대주, 생년월일, 성별, 성명, 주소,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 후보자가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기재내용도 동일합니다.

20. 사전투표소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 사전투표소에 전기·통신장애가 발생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을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 발생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전국 단위 통합선거인명부에 장애가 발생하여 다른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명단을 별도로 작성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하는 등 비상대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및 포상금 지급 안내

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4. 지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지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6.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 이용 선거범죄, 공천관련 금품 수수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중대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타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

9. 포상금을 받았다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사건이 혐의없음 등으로 검찰 불기소 처분 되었거나,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10.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얼마였습니까?

-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 ▶ 자의적으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는 여론을 조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 31.)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 이는 여론조사 결과로 인한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예방하여 유권자의 판단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효과
 - **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효과
- ▶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요?

-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 정당, 방송사, 신문사(인터넷 신문사 포함),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그 밖에 시기별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 ▶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체와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 ▶ 선거일전 60일부터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 다만, 정당에서 당내 후보자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 ▶ 아울러 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④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와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 ▶ 아울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 설계서·피조사자 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고,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7. 다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나요?

- ▶ 언론에서 이미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초 보도와 마찬가지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선관위 조사·단속활동

1. 선관위에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 ▶ 헌법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명선거 정착의 과제를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 ▶ 검찰이나 경찰이 선거범죄를 단속할 수 있음에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 별도로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기초로 그 조사·단속활동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1997년 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권을 신설하면서 선거부정을 예방하고, 선거현장에서 위법상태를 신속하게 제거하며, 위법행위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선거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2. 선관위의 조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 ▶ 조사권의 주요 내용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 증거물품 수거, 현장조치 및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 등입니다.

3. 장소 출입에 관하여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 이는 인신의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한 출입을 규정한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이 장소에 출입할 경우 관계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는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자료제출 요구에 관하여

- ▶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한 사람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는 점과,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자료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강제처분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5. 동행 또는 출석 요구에 관하여

- ▶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선관위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현행범인 또는 준 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가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동행시키거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 ▶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에 대하여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질문·조사에 관하여

- ▶ 범죄혐의의 사실을 발견하고 증거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질문·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고,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없이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합니다.

7. 증거물품 수거에 관하여

- ▶ 선거범죄 현장에서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수집·보관할 수 있습니다.
- ▶ 수거한 증거물품과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그 증거물품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증거물품을 소유·점유·관리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8. 현장의 조치에 관하여

- ▶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그 행

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선거의 특성상 일단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침해된 법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선거범죄 등의 예방과 위법상태의 신속한 제거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9.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에 관하여

▶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개좌개설 내역, 통장원부 사본,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수표에 의한 거래의 경우 그 수표의 최초발행기관 및 발행의뢰인의 인적사항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선거범죄의 짧은 공소시효를 고려할 때 선거비용과 관련한 당선무효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0. 선관위의 단속활동 경과 및 성과

▶ 선관위는 1989년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를 계기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점차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 당시 중앙선관위는 법적으로 단속권한은 없었지만 탈·불법행위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를 방지할 경우 선거의 민주적 기능이 형해화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각 당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공한을 보내는 등 창설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 단속만을 편성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러한 선관위의 적극적인 선거관리와 단속활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고취되었고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 선관위는 1992년부터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고, 1997년 선거범죄조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 이후 2000년 증거물품수거권과 재정신청권, 2002년 현장 조치권, 2004년 통신관련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 조사권 도입 등 단속권한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2004년에는 50배 과태료제도와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제도까지 도입되어 선거범죄를 근절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의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 이제 과거 선거부정의 대명사였던 돈 선거가 거의 사라지는 등 선거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선거질서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1. 후보자등록기간은?

▶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 간입니다.

2.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월 6일 이전부터)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인명부 등재)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3. 후보자등록 방법?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입니다.

4.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5천만 원, 구·시·군의 장 선거 : 1천만 원, 시·도의원선거 3백만 원, 구·시·군의원 선거 : 2백만 원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당선되거나 총 득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1번, 3번, 5번...)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합니다.

6. 당내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7.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선거별로 일정 범위 내의 선거구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8.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자치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기호는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이며,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입니다.

9.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되는 경우는?

▶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10.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배정받나요?

▶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 정당에서 동일한 선거구에 후보자를 2~4명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당이 동시에 추천한 후보자들의 순위를 직접 정할 수 있으며, 한 정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한 경우 그 기호는 '1-가, 1-나, 2-가, 2-나' 등으로 기호가 부여됩니다.

11. 정당 관여가 금지된 교육감선거의 경우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배정받나요?

▶ 교육감선거의 경우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를 교차하여 부여합니다.
※ 가 선거구 : A후보, B후보, C후보 순
나 선거구 : B후보, C후보, A후보 순
다 선거구 : C후보, A후보, B후보 순

12.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13.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5. 22.)부터 개시됩니다.
▶ 선거운동기간 전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안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실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고자 함.

■ 응시자격

- 연 령 : 27세이상(시험일 기준)
- 도로교통법제107조③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등

■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원서접수 : 2014. 4. 23(수) ~ 4. 25(금), 3일간
- 교부처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우편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응시원서, 신분증명서, 자격증소지자 사본, 수수료
- 도로교통법제107조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 필기시험

- 2014. 5. 10(토), 08:40 ~ 12:40, 접수시험장
- 시험과목

구분	제1교시	제2교시	제3교시
과목	교통안전수칙	전문학원관계법령	기능검정실시요령
문항 수	1시간, 50문항	1시간, 50문항	1시간, 50문항

■ 기능시험

- 2014. 5. 16(금), 5. 23(금) 시험장별로 2회 실시
- 시험장장이 지정한(공고) 날에 2회 응시 가능(불참시 불합격)
-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제1종보통도로주행시험과 동일

■ 합격기준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으로 하여 평균 70점이상
- 기능시험 : 100점 만점에 85점이상 득점자

어르신의 노후생활 동반자 '주택연금' 안내

일반형 주택연금이란?

- 어르신께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부부 모두 평생동안 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 주택소유자(공동소유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지급금 예시〉

(단위 : 만원)

가입연령	주택가격	1억	3억	5억
60세		23	69	114
65세		27	82	137
70세		33	100	167

*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2014.1월 기준)

사전가입 주택연금이란?

- 정부의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돈으로 일시에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14.5.31종료)
-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① 주택소유자가 만 50세 이상
 - ② 부부 기준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 및 그 집에 실제 거주
 - ③ 해당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보유
- 목돈지급액은 가입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지며, 연령은 부부 중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이란?

-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연령별로 인상된 연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만 지급하고, 종신토록 거주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①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다만, 주택은 일반주택만 대상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② 1가구 1주택자, 9억원 이하 주택,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 소유 및 거주, 전세 및 권리침해 없는 주택 등은 기존 종신방식과 동일
 - ③ 부부 중 연소자가 지급기간별 대상연령에 해당하는 자

〈지급기간별 선택가능 연령〉

지급기간	10년형	15년형	20년형	25년형	30년형
대상연령*	65~74	60~74	55~68	55~63	55~57

* 부부 중 연소자 기준

〈월지급금 예시〉

(단위 : 만원)

연령	종신	10년형	15년형	20년형
65세	55	94	71	60
70세	67	106	80	선택불가
74세	79	117	88	선택불가

* 주택가격 2억 기준

※ 2014년 3월 10일부터 가입요건 완화

- ☞ 2주택자도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연금 신청 가능 (주택면적이 1/2미만인 상가주택은 주택 수에 불 포함)
- ☞ 주택면적이 1/2이상인 상가주택 1채 소유자도 주택연금 신청가능

한국주택 금융공사 강원지사

(담당 이상규 ☎ 033-259-3615, 010-5540-3008)

국가가 보증하고 강원도에서 권장하는 주택연금

- 자식에게 물려 줄 것은 집이 아니라, "어르신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 주택연금은 부모봉양과 자식교육 후 집 한 채만 남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 부부가 평생 살면서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
- 부부 모두 돌아가신 후 집값과 비교하여 모자라면 정부가 부담하고, 남으면 자녀들에게 상속해주는 국가보증제도.
- 혜택 : 재산세 등 세금감면, 사망후 배우자에게 동일한 연금 지급, 국가가 보증해서 절대 안전, 평생거주에 평생 소유권 보장
- 가입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 ☎ 033-259-3615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부모님, 학생이 중증후유 장애를 입어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애를 입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1급~4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261-5000)

■ 신청자격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① 학생의 부모가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이거나 학생 본인이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지원대상이 됨
→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 ② 생활형편 요건 :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가정

■ 선발기준 (선발기준에 적합하면 인원 제한없이 전부 지원)

장학종류	신청대상	선발기준	학교발급서류
성적우수 장학생	중 학생 (2~3학년) 고등학생 (1학년)	직전 학년 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 평균이 D등급 이내	중학교3학년 : · 학교생활기록부 고등학교1학년 : · 재학증명서(고등학교 발행) · 학교생활기록부(중학교 발행)
	고등학생 (2~3학년)	직전 학년의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	고등학교2~3학년 : · 학교생활기록부
특기 장학생	중 학생 (3학년) 고등학생 (1~3학년)	○ 직전 학년도에 교내상 수상자 -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에 기재된 상 ○ 직전 학년도에 아래 교외상 수상자(수상 증빙자료 제출) -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에서 수상 -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인 경우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	수상증빙자료(원본)
학교장추천 장학생	초등학생 (1~6학년) 중 학생 (1학년) 특수학교 (학급)생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학교장추천서 : 별첨

■ 장학금 지원내역 (년 4회 지급 - 4월말, 5월말, 10월말, 11월말 지급)

▶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 중학생 : 분기 30만원 ▶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 제출서류

공단 서식	학교 발급 서류	읍면동 사무소 발급 서류	자동차 사고 증명서류	생활형편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서류)
장학금 지원 신청서 (공통)	선발 기준 참조	① 장애인단서 1부(장애등록자)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보험금 지급 확인원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수급확인서(차상위장애인) · 자활근로자확인서(차상위자활근로자) · 우선돌봄 차상위확인서(우선돌봄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신청기간 : 2014. 3. 3 ~ 4. 30 (4월 15일까지 조기 접수 요망)

- 3월에 신청하면 4월말, 5월말, 10월말, 11월말에 장학금 지급

- 4월에 신청하면 5월말, 10월말, 11월말에 장학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우:200-933)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지원업무담당자 앞

※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상담전화 : 261-5000, 080-749-7171, www.ts2020.kr접속

제 2014 - / 호

2014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공고

※ 도로교통법 제106조 및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회 운전면허시험장별 필기시험 접수 인원(시험장별 선착순 접수)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경기	
		강남	도봉	강서	서부	남부	북부					용인	안산
학과강사	3,050	100	200	150	150	150	100	180	150	100	100	100	100
기능강사	3,050	100	200	150	150	150	100	180	150	100	100	100	100
기능검정원	3,050	100	200	150	150	150	100	180	150	100	100	100	100

의정부	춘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릉	원주	태백	청주	충주	예산	포항	문경			마산			
160	60	50	100	100	200	50	120	100	150	130	100	100	50		
160	60	50	100	100	200	50	120	100	150	130	100	100	50		
160	60	50	100	100	200	50	120	100	150	130	100	100	50		

2.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시·장소

구분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학과강사
교부 및 접수	02. 19(수)~02. 21(금)	04. 23(수)~04. 25(금)	06. 25(수)~06. 27(금)
필기시험	03. 08(토)	05. 10(토)	07. 12(토)
기능 시험	1차	03. 14(금)	05. 16(금)
	2차	03. 21(금)	05. 23(금)
시험장소	응시원서를 접수한 운전면허시험장		

가. 원서 접수 및 장소 : 09:00~18:00,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우편접수 불가)
 나. 응시료 교부 : 응시원서 접수 시험장에서 응시료 교부

3. 제출서류 및 수수료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나. 응시수수료 : 필기시험 10,000원, 기능시험 : 21,000원
 다. 기능검정원·기능강사·학과강사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4. 응시자격(공통)

■ 기능시험 응시전까지 도로교통법 제83조제2항에 규정된 제1종보통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연습면허 제외) 소지자

5. 응시 결격사항(도로교통법제106조 및 107조 적용)

가. 학과·기능강사
 ■ 도로교통법 제106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20세 미만인 사람(당해 필기시험전일 기준)
 -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나. 기능검정원
 ■ 도로교통법 제10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27세 미만인 사람(당해 필기시험전일 기준)
 -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 미만인 사람
 다. 공통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등
 라. 학력 : 제한 없음

6. 시험과목

가. 서류심사 : 응시자격 심사(결격사항 해당 여부)
 나. 필기시험(당일 08:40~12:40)

교시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1교시	교통안전수칙	교통안전수칙	교통안전수칙
2교시	전문학원관계법령	전문학원관계법령	전문학원관계법령
3교시	학과강사실시요령	기능교육실시요령	기능검정실시요령

다. 기능시험

■ 도로교통법제83조 2항에 규정된 제1종보통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과 동일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2번의 응시 기회부여,
 다만, 시험장장이 지정한 날에 미응시 또는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
 라. 시험의 일부면제
 ■ 기능강사·학과강사·기능검정원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인 경우 1차 필기시험 중 "교통안전수칙" 및 "전문학원관계법령" 시험 면제

7. 합격기준(공통)

가.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체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기능시험 : 제1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자

8. 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 필기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나. 기능시험 : 기능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취소시 응시수수료 반환은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에 준용
 나. 시험장장이 지정한 일시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불합격 처리
 다.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험장 이외 시험장에서 시험응시 불가(신체장애인 제외)
 라.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고,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마.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으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제한
 바. 응시자는 필기·기능시험 시간 10분전까지 입실
 사. 응시자는 신분증명서,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필기시험)을 지참
 아. 최종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자격증 교부비용은 본인 부담

10. 참고사항

가.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음
 나. 응시결격·시험진행 방법 등 도로교통법령 개정시 개정법령 적용
 다. 응시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 가능
 라. 최종합격자 연수교육은 개별접수(문의처 : 02-2230-6143~4)
 마.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조

11.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현황

지역	운전면허시험장	지역	운전면허시험장
서울	강남	강원	춘천
	도봉		강릉
	강서		원주
	서부		태백
부산	부산남부	충북	청주
	부산북부		충주
대구	대구	충남	예산
인천	인천	전북	전북
울산	울산	전남	전남
대전	대전	경북	문경
경기	용인		포항
	안산		마산
	의정부	제주	

12. 안내전화 번호

면허시험처	고객상담처	홈페이지	연수교육
02-2230-5346~9	1577-1120	www.kroad.or.kr	02-2230-6143~4

***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주세요!!**

복지소외계층 전국 특별조사 실시
-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 -

- ▶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사회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 ▶ 주위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 지원해 드리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 발굴된 분들에게는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지원 뿐 아니라 시군구의 희망 복지지원단을 통해 지역 내 민간지원과도 연결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 여러분이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눈길과 전화 한통이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 ▶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을 알고 계시거나, 찾으시면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가까운 읍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신고 · 조사기간 : 2014. 3. 4. ~ 3. 31.
☎ 신고하실 곳 : 보건복지콜센터(☎129)
양양군청 신고센터(☎671-0129)

춘삼월 봄맛이 계획 더하기

속초기상대장 서광신

유난히도 길었던 이번 겨울도 끝나는 듯하다. 봄을 알리는 3월로 접어들면서 햇빛이 비추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겨우내 쌓였던 눈도 어느새 이른 봄 햇살 속에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리고 이번 달 중순이 지나면 매화를 시작으로 봄꽃이 하나 둘씩 피어나 봄의 싱그러움을 더하게 될 것이다.

지난겨울, 연일 계속된 눈으로 지친 마음에서 일까... 이번 봄은 유난히 더 반갑게 느껴지는데, 봄도 어느 계절 못지않게 각종 안전사고와 건강에 위협을 주는 갖가지 요소들이 존재한다.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약해지면서 공사 현장이나 절개지, 옹벽 등에서 낙석,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기도 하고 아직까지 상공에 머물러 있는 찬 공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꽃샘추위가 찾아오기도 한다. 그리고 일중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기도 하면서 겨울보다 봄철 감기 환자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흔히들 봄의 불청객이라 불리는 황사가 주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이는 봄철 건조해진 중국 북부나 몽골의 황토지대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불어들어 와 서서히 하강하면서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각종 중금속과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인체에 들어와 차곡차곡 쌓여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지면서 요즘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듯 봄철에도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는 존재하고 있어 어느 계절 못지않게 안전관리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라 할 수 있다.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텐데, 그 틈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을 다시 한번 잘 살피는 것과 건강관리를 위해 외출에서 돌아오면 손발을 잘 씻는 등의 작은 실천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 한다.

◆ 내, 혹시 결핵일까? (Q & A)

Q1 결핵은 무슨 병 인가요 ?

활동성 결핵환자가 기침 혹은 재채기를 할때 공기 중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떠 있는데, 이를 주위 사람들이 들이마시으로써 감염되는 병이 결핵입니다. 결핵은 오직 호흡기를 통해서만 감염이 됩니다. 결핵은 대부분 폐에서 생기고 폐결핵 환자가 결핵균을 전염시킵니다. 그러므로 결핵이라고 하면 대부분 폐결핵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결핵은 림프절이나 척추등 우리 몸 어디에서나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폐 외의 장기에서 발생한 결핵은 폐외 결핵이라고 부릅니다.

Q2 결핵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

결핵의 증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호흡기 증상인 기침, 가래, 객혈, 호흡곤란 등이 있을 수 있고 발열, 수면 중 식은땀, 피로, 체중감소 등의 전신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인 기침은 감기, 천식 등에서도 관찰되므로 증상만으로는 결핵과 이 질환들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기증상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호전되므로 특별한 원인 없이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결핵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결핵은 어떻게 진단 하나요 ?

흉부X선 검사는 결핵진단에 유용한 검사 방법이지만 단독으로 결핵을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이 의심되면 결핵 확진을 위해 객담검사를 실시 합니다. 결핵균은 결핵 환자의 폐에서만 자라므로 객담 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면 결핵으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결핵을 치료하고 남은 흉터(결핵병변)나 폐암, 기관지염을 결핵으로 오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객담 검사가 결핵의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입니다.

Q4 잠복 결핵 감염과 결핵의 차이는 무엇 인가요 ?

잠복결핵감염이란 활동을 중단한(휴면 중인)결핵균을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핵과 달리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타인에게 결핵균을 전파시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저하되면 결핵균이 활동하여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으므로 잠복결핵감염기에 휴면중인 결핵균을 죽이기 위한 치료가 필요 합니다.

□ 잠복결핵감염과 결핵의 구분

	잠복결핵 감염	결 핵
결 핵 균 보유	휴면중인 결핵균 보유	활동하는결핵균 보유
결핵감염(TST)검사	양 성	양 성
흉부X선 검사	정 상	이 상
객 담 검 사	정상(음성)	이상(양성)
증 상	없 음	있 음
전 염 성	없 음	있 음

양 양 군 보 건 소

운전정밀검사 휴일검사 시행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편의를 도모 하기 위하여 '14년 휴일검사를 시행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검사장 : 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정밀검사장**
※ 교통안전교육센터 및 제주지사는 제외
- 시행검사 :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유지)검사
- 시행일자 : 2/23(일), 4/13(일), 6/15(일), 8/10(일), 10/19(일), 12/14(일)
- 검사예약 : 인터넷(www.ts2020.kr) 및 전화(033-262-3367)
- 검사시작시간 : 오전검사(09:00), 오후검사(1:20)
- 주의사항 : 검사장 1일 수용가능 수검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사전 예약자에 한해 실시**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약하신 후 검사일 오전 09:00 오후 1:20까지 검사장에 도착하셔야 수검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 033-262-3367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석사동 123-1)